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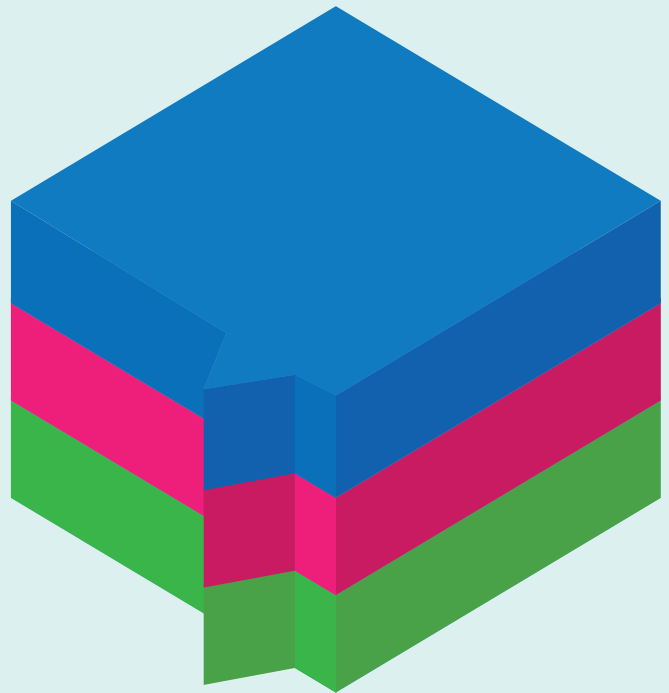
2023

국제 정책

교류 × 확산을 위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번역 시리즈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사회적기업 관련 국제기구별 최신 주요 보고서(연도순)



| 주요 결의 및 권고 | 2023 | | 2022 | | 2021 | | 2020 | | 2019 | | 2018 이전 | | | |
|---|--|---|--|---|--|---|---|--|--|--|--|---|---|--|
| | *[UN]Promoting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for sustainable development(A/77/L.60) * UN Resolution on SSE | | *[ILO] Resolution concerning decent work and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 | *[OECD]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and Social Innovation | | | | | | [ILO] Transition from the Informal to the Formal Economy Recommendation, 2015 (No. 204) | | | |
| OECD | 법제도 | *Policy Guide on Legal Frameworks for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 (LEED Papers) Policy brief on making the most of the social economy's contribution to the circular economy | | | | | | | | | [2014] (LEED Papers) Improving social inclusion at the local level through the social economy: Designing an enabling policy framework | | |
| | | (LEED Papers) Policy brief on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inclusive and social entrepreneurship training schemes | * (LEED Papers) Legal frameworks for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 | | | | | | | | | | |
| | | | * (LEED Papers) Policy brief on access to finance for inclusive and social entrepreneurship | | | | | | | | | | | |
| | | | *Policies for resilient local economies | | | | | | | | | | | |
| | | *Designing Legal Frameworks for Social Enterprises : Practical Guidance for Policy Makers | | | | | | | | | | | | |
| | 임팩트 통계 | *Policy Guide on Social Impact Measurement for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 | (LEED Papers) Social impact measurement for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 | | | | | | | | [2016] (LEED Papers) Policy brief on scaling the impact of social enterprises : Policies for social entrepreneurship [2015] (OECD Employment Policy Papers) Policy brief on Social Entrepreneurship - Social Impact Measurement for Social Enterprises | |
| 역할 미래 | | | | | | | | * (LEED Papers) Regional Strategies for the Social Economy: Examples from France, Spain, Sweden and Poland | | | | | | |
| | | | | | | | | * (OECD Policy Responses to Coronavirus (COVID-19)) Social economy and the COVID-19 crisis: current and future roles | | | | | | |
| 기타 | * (LEED Papers) Beyond pink-collar jobs for women and the social economy | * (LEED Papers) Unlocking the potential of youth-led social enterprises | | *Building local ecosystems for social innovation | | | | | | | | | | |
| ILO | 법제도 | | *Cooperatives and the World of Work Series No. 16 - Legal Compendium on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 | Financial mechanisms for innovativ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ecosystems: The case of the Republic of Korea | | | | | | | [2017] Public policies for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Towards a favourable environment The case of the Republic of Korea | | |
| | 임팩트 통계 | *Measuring cooperatives: A progress update on the ILO Pilot study on the applicability and implementation of the Guidelines concerning statistics of cooperatives in five countries | Measuring Cooperatives: An information guide on the ILO Guidelines concerning Statistics of Cooperatives | | | | | *Statistics of Cooperatives: Concepts, classification, work and economic contribution measurements | | | | | [2017] Conceptual Framework for the Purpose of Measurement of Cooperatives and its Operationalization | |
| | | *Measuring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SSE): A roadmap towards Guidelines concerning statistics of the SSE | | | | | | | | | | | *[2017] Use of statistics on cooperatives in national policy making | |
| | 역할 미래 | | *Advancing the 2030 Agenda through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 | | | | | UNTFSSSE statement on "What role for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in the post COVID-19 crisis recovery?" | | Cooperatives & Social Solidarity Economy - Responses to key issues in the report of the Global Commission on the Future of Work | | [2017]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and the Future of Work | |
| | | | Decent work and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 | | | | | | | | | | |
| | 기타 | | | | | Mapping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Landscape in Asia | | | *The contribution of SSE and social finance to the future of work | | *Financial Mechanisms for Innovativ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Ecosystems - Full Report | | | |
| | | | | | *Platform labour in search of value: A study of workers' organizing practices and business models in the digital economy | | | | | | | | | |
| UN | 법제도 | | | | *Guidelines for Local Governments on Policies for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 | | | | | | | | |
| | 임팩트 통계 | *Spotlight 2022: UNRISD Releases Guidance for Authentic Sustainability Assessment | Thresholds of Transformation: UNRISD Sustainable Development Performance Indicators Pilot Testing—Synthesis Report | | Producing Statistics on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Policy Recommendations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 | Policy Systems and Measures for the Social Economy in Seoul | | *Measuring and Reporting Sustainability Performance: Are Corporations and SSE Organizations Meeting the SDG Challenge? | | | [2018] Measuring the Scale and Impact of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 | |
| | | Indicators That Matter: Toward Authentic Sustainability Reporting | | | *Producing Statistics on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The State of the Art | | | | Sustainable Development Impact Indicators for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State of the Art | | | [2018] The Social Economy and an Integrated Approach to the Localized SDGs in Seoul: Interrogating the Evidence | | |
| | 역할 미래 | | | | | | | | *What role for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in the post COVID-19 crisis recovery | | | [2018] The Social Economy in Seoul: Assessing the Economic, Social, Environmental and Political Impacts | | |
| | | | | | | | | | | | | [2018] Achiev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rough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 | |
| | 기타 | Encyclopedia of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 | | | *Mapping International SSE Mapping Exercises | | | | | | [2014]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and the Challenge of Sustainable Development - UNTFSSSE Position Paper (2014) | | |
| *Historic Breakthrough for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at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 | | | | | | | | | [2018]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potlight on the Social Economy in Seoul—Full Report | | | |

□ **진흥원 발간 번역 자료**

| 기관명 | 카테고리 | 번호 | 원문 자료명 | |
|-------|------------|-------|---|--|
| UN | 주요 결의 및 권고 | 1 | Promoting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for sustainable development(A/77/L.60) *UN Resolution on SSE | |
| OECD | | 2 |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and Social Innovation | |
| ILO | | 3 | Resolution concerning decent work and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 |
| OECD | 법제도 | 4 | Policy Guide on Legal Frameworks on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 |
| | | 5 | Legal frameworks for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 |
| | | 6 | Policy brief on access to finance for inclusive and social entrepreneurship | |
| | | 7 | Policies for resilient local economies | |
| | | 8 | Designing Legal Frameworks for Social Enterprises: Practical Guidance for Policy Makers | |
| | | 9 | Policy Guide on Social Impact Measurement for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 |
| | 영향/통계 | 10 | Regional Strategies for the Social Economy: Examples from France, Spain, Sweden and Poland | |
| | | 11 | Social economy and the COVID-19 crisis: current and future roles | |
| | 기타주제 | 12 | Beyond pink-collar jobs for women and the social economy | |
| | | 13 | Unlocking the potential of youth-led social enterprises | |
| | | 14 | Building local ecosystems for social innovation | |
| | ILO | 법제도 | 15 | Cooperatives and the World of Work Series No. 16 – Legal Compendium on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
| | | 영향/통계 | 16 | Measuring cooperatives: A progress update on the ILO Pilot study on the applicability and implementation of the Guidelines concerning statistics of cooperatives in five countries |
| | | | 17 | Measuring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SSE): A roadmap towards Guidelines concerning statistics of the SSE |
| 18 | | | Statistics of Cooperatives: Concepts, classification, work and economic contribution measurements | |
| 19 | | | Use of statistics on cooperatives in national policy making | |
| 영향/미래 | | 20 | Advancing the 2030 Agenda through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 |
| 기타주제 | | 21 | Platform labour in search of value: A study of workers’ organizing practices and business models in the digital economy | |
| | | 22 | The contribution of SSE and social finance to the future of work | |
| | | 23 | Financial Mechanisms for Innovativ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Ecosystems – Full Report | |
| UN | | 법제도 | 24 | Guidelines for Local Governments on Policies for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
| | 영향/통계 | 25 | Spotlight 2022: UNRISD Releases Guidance for Authentic Sustainability Assessment | |
| | | 26 | Producing Statistics on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The State of the Art | |
| | | 27 | Measuring and Reporting Sustainability Performance: Are Corporations and SSE Organizations Meeting the SDG Challenge? | |
| | 영향/미래 | 28 | What role for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in the post COVID-19 crisis recovery | |
| | 기타주제 | 29 | Historic Breakthrough for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at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
| | | 30 | Mapping International SSE Mapping Exercises | |

▶ Texts adopted

국제노동총회 - 110차, 2022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결의 (2022년 6월 10일)

2022년 제110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보고서 VI」를 기반으로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연대경제 관련 일반 토의 결과,

1. 다음의 사항을 채택한다.
2. ILO 이사회가 토의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고 사무국이 이를 이행하도록 이끌어 줄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3. 사무총장에게 다음을 요청한다.
 - (a) 제346차 이사회(2022년 11월)의 심의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연대경제 관련 전략 및 실행 계획 개발
 - (b) 관련 국제 및 지역 기구에 토의 결과 공지 그리고
 - (c) 향후 프로그램 및 예산안을 준비하고 추가 예산 자원 동원 시, 토의 결과 고려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결론

I. 개요

1. 국제노동기구(ILO) 헌장의 필라델피아 선언에 따라 “모든 인간에게는 인종이나 신념, 성별에 관계없이 자유와 존엄성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안정과 기회 균등이 보장되는 조건 속에서 물질적 복지뿐만 아니라 정신적 발달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국내 및 국제 정책의 핵심 목표로 수립되어야 한다”.
2. 일의 세계에 있어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차원의 균형을 이루고 사람, 지구, 번영, 평화, 협력과 연대의 더 나은 미래에 기여하고,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를 촉진하고 불평등을 감소하기 위해 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의 목표와 사회정의,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ILO의 임무를 확인한다.
3. 2022년 개정된 ‘공정한 세계화를 위한 사회 정의에 관한 ILO 선언’(2008), ‘일의 미래를 위한 ILO 100주년 선언’(2019),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COVID-19 위기로부터 사람 중심 회복을 위한 ILO 글로벌 행동 촉구’(2021)에서 사회연대경제가 지속 가능한 발전, 사회 정의, 양질의 일자리, 생산적 고용과 생활수준 개선을 달성하는 주요 수단으로서 명시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한다.

4. ILO는 설립 이래로 ILO의 임무와 사회연대경제의 관련성을 인식하며 기존 관련 행동 등을 통해 UN 체제 내에서 사회연대경제의 활성화를 주도해 왔다. 사회연대경제가 새로운 개념은 아니지만, 21세기 초 이후 사회연대경제의 정책적 중요성과 가시성이 크게 높아졌다. 2002년 협동조합 촉진 권고(No. 193), 2015년 비공식 경제에서 공식 경제로의 전환 권고(No. 204), 2017년 평화와 회복력을 위한 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 권고(No. 205)는 빈곤 감소, 포용적 사회, 비공식 경제에서 공식 경제로의 전환, 회복을 가능하게 하고 회복력을 구축하는 데 있어 사회연대경제의 기여를 인정한다.

II. 사회연대경제의 정의

5. 사회연대경제는 자발적 협력과 상호 원조, 민주적 및/또는 참여적 지배구조, 자율성과 독립성, 자산뿐만 아니라 이익잉여 및/또는 이윤의 분배와 사용에 있어 자본보다 사람과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원칙에 기반을 두고 집단적 및/또는 일반적 이익에 기여하기 위해 경제, 사회 및 환경 활동에 참여하는 기업, 조직 및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사회연대경제 조직은 장기적인 실행력과 지속 가능성, 그리고 비공식 경제에서 공식 경제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활동한다.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조직의 기능에 본질적이고 인류와 지구를 위한 배려, 평등과 공정, 상호의존, 자치, 투명성과 책임성, 양질의 일자리와 생계유지에 부합하는 일련의 가치를 실천한다. 각국의 상황에 따라 사회연대경제는 협동조합, 사단, 공제회, 재단, 사회적기업, 자조 단체 및 사회연대경제의 가치와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III. 도전과제와 기회를 다루기 위한 지침

6. 사람이 중심이 되는 노동의 미래를 위한 사회연대경제와 양질의 일자리를 활성화하는 기회를 추구함에 있어 회원국은 국가적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 (a) 양질의 일자리,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사회 정의, 지속 가능한 개발 및 모든 사람의 생활수준 향상에 대한 사회연대경제의 기여를 고려한다.
 - (b) 인간과 지구에 의미가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바라는 시대에 노동의 의미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역할을 인정한다.
 - (c) 모든 유형의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일터에서의 기본원칙과 권리, 기타 인권 및 관련 국제노동기준을 준수, 촉진 및 실현한다.
 - (d)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소외계층과 취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 특히, 농촌 지역 등에 있는 여성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기초가 튼튼하고 혁신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사회연대경제의 기여와 사회연대경제의 지역적 정착을 중시한다.
 - (e) 돌봄과 무급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며, 취약계층 관련 등에서 사회연대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포용적이고 통합적이며 성별을 고려한 접근법을 개발한다.
 - (f) 비공식 경제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고 비공식에서 공식 경제로의 전환과 양질의 일자리 및 보편적이고, 적절하며,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보호 시스템의 달성을 촉진하는 전략과 수단의 설계, 실행 및 모니터링에서 사회연대경제 근로자와 조직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을 고려한다.
 - (g) 2007년 '지속 가능한 기업 촉진에 관한 결론'에 명시된 바와 같이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지속 가능한 기업의 기여를 고려한다.

- (h)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 목표를 더 잘 달성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조직과 다른 기업 간의 상호보완성을 인식하고 촉진한다.
- (i) 공정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사회연대경제의 기여를 인정하고 지원한다.
- (j)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며, 원주민과 부족민의 전통 지식과 문화의 다양성, 연대 및 존중을 촉진하는 사회연대경제의 역할을 고려한다.
- (k) 중소기업 특히, 근로자 소유로의 전환을 통해 기업을 개편한 경우를 포함하여, 위기를 견디고 일자리를 보존할 수 있는 사회연대경제의 잠재력을 평가한다.

7. 그러나 회원국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도전과제가 있다.

- (a) 많은 영세기업, 중소기업이 겪는 것과 동일한 어려움 외에도 적절한 참여의 부족, 비공식 경제를 악화시키는 정책, 빈곤, 부채, 법적 불확실성, 취약한 법치, 금융 접근성 부족, 불공정 경쟁 및 거래, 우호적인 환경에 필요한 조건의 결핍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불리한 환경을 포함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직면하는 고유한 문제
- (b) 다양하고 구체적인 금융 수단 및 제도 등을 통해 금융 서비스에 대한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접근성 개선 촉진
- (c) 모두를 위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로의 공정한 전환에 대한 사회연대경제조직 및 지속 가능한 기업의 기여를 촉진하고, 기후 변화 등 여러 어려움들을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소비 및 생산 활성화
- (d) 기술 및 인프라 뿐만 아니라 역량 개발 및 평생 학습에 투자하고, 1998년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권고안(No. 189)에 따라 다른 기업과의 상호보완성 및 가능한 시너지를 활용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수평적, 수직적 및 횡단적 조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사회연대경제의 역할을 인정하고 지원
- (e) 사회연대경제 조직 및 근로자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조치가 이들을 가장 잘 대표하는 조직, 필요시에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대표하거나 관련 조직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로 결정 될 수 있도록 사회연대경제조직과 근로자에게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보장
- (f) 여성, 청년 그리고 실업자, 장애인, 이주 노동자, 원주민과 같은 취약계층과 관련하여 사회적 포용성을 구축하기 위한 사회연대경제의 잠재력을 지원할 필요성
- (g) 제193호 권고안에 따라 위장사회연대경제조직(pseudo-SSE)을 규제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노동법 등 관련 법 우회를 방지하고, 법을 준수하고 책임 있는 기업, 특히 영세기업 및 중소기업이 불공정 경쟁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에 대응하는 것의 중요성

IV. 정부와 사회적 파트너의 역할

- 8. 회원국은 모든 유형의 사회연대경제조직 내에서 노동 기본원칙과 권리, 기타 인권 및 관련 국제 노동기준을 존중, 촉진 및 실현할 의무가 있다.
- 9.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지원을 받아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 (a) 국제노동기준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를 촉진하고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

하며,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지속 가능한 기업에 기여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의 본질과 다양성에 부합하는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 (b) ILO 권고안 제193호에 따라 국내법 및 관행에 있어서 여타 기업들과 비교해 사회연대경제 조직에게 불이익이 없는 공정 경쟁의 장을 보장한다.
- (c) (부록에 나열된 기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근본적인 노동 기본원칙과 권리, 기타 인권 및 관련 국제 노동기준에 따라 강력하고,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경제의 회복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 등에서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정책을 제정한다.
- (d) 공정한 디지털 및 환경적 전환을 촉진하고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고용 친화적 거시경제, 조세, 산업, 사회, 환경 및 기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를 국가 발전, 회복 및 고용 전략에 통합한다.
- (e) 비공식 경제에서 공식 경제로의 전환에서 사회연대경제의 역할을 인정하고,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와 조직을 위한 공식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 (f)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의 공정하고, 공평하며, 지속 가능한 거래 및 기타 협력 개발을 통해 국내 및 글로벌 공급망의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사회연대경제의 기여를 증진한다.
- (g) 지방 및 지역을 포함한 모든 수준에서 사회연대경제조직과 공공기관 간의 상호작용 및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 (h) 권고안 제193호에 따라, 특별히 취약계층과 취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정보, 금융, 시장, 기술, 인프라 그리고 적절하게 규제되고 사회적 책임에 기반을 둔 공공조달 접근성을 개선하도록 지원한다.
- (i) 적절한 경우,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가 사회 혁신, 생산성, 역량 개발, 기업이 정신 및 협력을 촉진하는 동시에 원주민 및 부족민의 전통과 문화를 보존 및 확산하도록 보장한다.
- (j) 사회연대경제조직 및 지속 가능한 기업의 발전과 공식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반부패, 우수한 거버넌스를 촉진 하고, 등록을 용이하게 하며,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한다.
- (k) 국가 내·외부에 걸쳐 사회연대경제 관련 정책을 부처 간에 협력하고 조정하는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 (l) 근로 감독을 강화하고, 위장사회연대경제조직, 불법 관행과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억제하며 처벌하기 위해 근로 감독관, 사회적 파트너 및 사회연대경제 대표 간의 협력을 도모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존한다.
- (m) 사회연대경제를 모든 수준의 공교육 과정에 통합하고, 회복력과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지식 함양 관련 교육을 포함하여 사회연대경제의 근로자와 조직의 교육 및 훈련에 투자한다.
- (n)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알리기 위해 위성 계정 및 국가 통계 기관과 사회연대경제조직 대표 간의 협력을 통해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통계를 개선한다.

10. 사회적 파트너는 상호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에 있어 사회연대경제에 대해 협력적이고 능동

적인 태도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야 하며, 사회연대경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우수 사례에 대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해야 한다.

11. 정부와 사회적 파트너는 보편적이고, 적절하며,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 보호 시스템을 증진하고, 평생 학습 및 훈련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며, 기본권으로서의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 폭력과 괴롭힘이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2. 필요 시, 사용자 조직은 가입을 희망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에게 회원 자격을 주고, 적절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사용자 조직은 또한 사회연대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 네트워크 및 파트너에 대한 접근성을 촉진하고, 사회연대경제의 사업 잠재력, 기업경영 및 관리 역량을 향상시키며,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시장 진출 및 기관자금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13. 근로자 조직은 경제에서의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 인권 및 노동권의 증진을 추구하는 데 있어 사회연대경제조직과 역사적인 뿌리를 공유한다. 근로자 조직은 사회연대경제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을 지지하고 옹호하며, 이 상호작용은 사회연대경제 근로자의 노동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할 사회연대경제 근로자를 모집함으로써 강화되고, 사회연대경제조직 근로자의 조직화 및 단체교섭을 지원하며,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파트너십과 연대를 개발하고, 사회연대경제 근로자의 가시성을 높인다. 근로자 단체는 특히 초기단계에 있는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조언과 상담을 제공하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사회연대경제의 제품 및 서비스 제공을 촉진하며, 필요 시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설립에 기여할 수 있다.

V.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역할

14. ILO의 헌장 상 임무에 근거하여 사무국은 사회연대경제의 다양한 성장 단계 등 가입국의 현실과 요구 및 관련 국제노동기준을 고려하면서, 강력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설립 및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연대경제와 관련된 ILO 및 UN 법률 문서의 일부 목록은 부록에 포함되어 있다.
15. 100주년 선언에 따르면, ILO는 모두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산적인 고용을 이루고 생활수준을 개선하고자 사회연대경제조직과 지속 가능한 기업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을 총괄해야 한다.
16. 사람이 중심이 되는 양질의 일자리 미래를 위한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파트너와 함께 사무국이 취할 조치는 법률 및 정책 자문 제공, 지지활동, 지식 창출, 우수 사례의 교류 및 확산, 훈련 및 교육, 역량개발, 개발 협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무국은 다음을 목표로 해야 한다.
 - (a) 아래 정책 프레임워크를 발전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법적 및 제도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기업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개발하는 데 있어 ILO의 각 조직을 지원한다.
 - 비공식에서 공식 경제로의 전환
 - 생산성 문제
 - 청년과 취약계층 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역량 개발 및 양질의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접근성
 - 성 평등 및 여성의 권리 증진
 -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의 실질적인 인정

- 비차별
 - 아동 노동 및 강제 노동의 철폐
 -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
 - 환경적 지속 가능성으로의 공정한 전환과 공정한 디지털 전환
- (b) 우수 사례 공유, 연구의 수행 및 확산,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사회연대경제의 기여와 관련하여 ILO의 각 조직, 학술 기관, 일반 대중 및 기타 이해 관계자의 인식 제고 활동 등을 통해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킨다.
- (c) 회원국이 사회연대경제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도를 측정하는 방법론적 체계를 개발하고,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비교 가능하고, 시의성과 신뢰성이 있고, 적합한 데이터를 수집 및 축적하도록 지원하고, 사회연대경제 관련 통계에 대한 국제적 지침의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양질의 일자리 촉진에 기여할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와 대표기관, 국가 통계기관과 국제기구와의 협업을 통해 사회연대경제 데이터에 관한 국제 관측 기관 설립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다.
- (d)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제도적 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 파트너의 역량 개발에 초점을 맞추면서 양질의 일자리 국가별 프로그램,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을 포함한 개발 협력 프로젝트, 기타 관련 ILO 활동 등을 통해 지역 및 국가 차원에서 사회연대경제를 ILO 활동에 통합한다.
- (e) 돌봄 경제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및 비공식 경제에서 공식 경제로의 전환과 같은 시급한 영역에서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포괄적인 국가 전략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사무국의 지원을 강화하고 가속화한다.
- (f)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와 가장 대표적인 사용자 및 근로자 조직 간의 파트너십을 촉진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성장을 이루고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원 서비스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g) 사회연대경제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촉진하기 위해 ILO의 국제 훈련 센터(International Training Center)와 협력하여, 생산성, 회복력, 사회 공헌 및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직의 발전을 지원하는 역량개발을 제공한다.
- (h) 사회연대경제조직이 노동법을 위반할 목적으로 설립 또는 활용되거나 위장 고용관계를 숨기는데 활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에 적용 가능한 노동 또는 여타 직장 관련 법률의 효과적인 집행에 관한 지침을 개발하고 노동 감독관에게 훈련을 제공한다.
- (i) ILO 프로그램 및 예산에 관련된 성과, 산출물 및 지표에 사회연대경제를 더 잘 통합하고,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사무국 활동을 위한 자원을 증강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한다.
- (j) 사용자 및 근로자 조직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특히 사용자 활동지원국(Bureau for Employers' Activities: ACT/EMP) 및 근로자 활동지원국(Bureau for Workers' Activities: ACTRAV)과 함께 사회연대경제 촉진에 관한 사무국 전반의 협력 메커니즘을 재활성화한다;
- (k) 사회연대경제 관련 국제적 행동을 통해 고용 친화적 거시경제 및 산업 정책에서 국제노동 기준을 주류화하기 위해서 UN 체제, 국제 금융기관, 기타 다자기관 내에서 정책 일관성을 촉진하고, 유엔 기구 간 사회연대경제 태스크포스의 활동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증진하기 위해서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사무국의 리더십을 강화한다.
- (l) 기존의 프레임워크와 협정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정책 지침과 수단과 관련한 공조를 더 잘 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 관련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강화하며, 가능한 경우 확대한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 본 시리즈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정책조사연구팀에서 기획, 발간하였습니다.
번역자료 파일은 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